산학협력단규정류관리규정

제1장 총칙

- 제1조(목적) 본 규정은 동명대학교산학협력단(이하 "본 산학단"이라한다)에서 시행하는 규정류의 제정,개정,폐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① 본 규정에서 "본 산학단" 또는 "본 산학단 소관 부서"라 함은 본 산학단 내 설치 조직인 산학협력과, 각사업단, 사업팀, 센터, 연구소 등을 말하며, 규정의 "담당부서"라 함은산 학협력단내 규정관리담당 업무부서를 말한다.
- ② 본 규정에서 규정류라 함은 본 산학단 관계법령 및 정관과 운영규정에 준거하여 본 산학단 의제반 업무수행 지침이나 절차를 명시한 조문제제를 말하며, 그 내용에 따라 규정, 세칙, 내규로 구분한다.
- ③ 본 규정에서 "규정"이라 함은 관계법령, 정관에 의거하여 본 산학단의 전반적인 업무 조직행정 등에 관한 구체적 준칙과 업무수행의 기본방침, 절차에 관하여 명시한 것을 말한다.
- ④ 본 규정에서 "세칙"이라 함은 규정에 의거하여 정하는 세부사항 또는 각 부서의 업무수행의 기준이 될 세부 운영 사항을 말한다.
- ⑤ 본 규정에서 "내규"라 함은 본 산학단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보다 구체적 인 지침 또는 절차를 명시하는 하위규칙을 말한다.

제2장 규정류의 형식

- 제3조(종류) 본 산학단 규정류는 그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.
- 1. 규정
- 2. 세칙
- 3. 내규
- 제4조(규정의 형식) ① <u>규정류는 다음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되 본칙이라는 표시는 하지 않는다.</u> 다만, 규정의 내용이 단순하여 조문만으로 편성하여도 무리가 없을 경우에는 조문만으로 편성할 수 있다.(개정 2013.00.00)
 - 1. 총칙(목적, 용어의 정의, 적용범위 등)
 - 2. 본칙(목적 달성을 위한 기본사항, 지침, 절차 등)
 - 3. 부칙(시행일자, 경과조치 등)
- ② 규정류는 다음과 같은 형식과 내용을 갖추어야 한다.
- 1. 조문은 법령형식으로 간단명료하여야 한다.
- 2. 장, 절, 조, 항, 호로 구분하는 형식을 갖추어야 한다.
- 3. 별표, 서식, 보기는 부칙 다음에 수록한다.
- 4. 문자는 한글을 원칙으로 하고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되 부득이한 경우 외래어를 혼용할

산학협력단규정류관리규정 6-1-65~2

수 있다.

- 5. 제2호의 표기에서 조는 제1조, 제2조로, 항은 ①,②로, 호는 1, 2로 표시하고 호 이하는 가, 나로 그 이하는 ㄱ,ㄴ으로 표시한다.
- 6. 부칙의 조문은 ①,②로 표시한다.

제3장 규정의 개정과 개폐

- 제5조(입악) ① 규정류의 입안은 그 규정을 필요로 하는 소관 부서에서 담당부서에 제출한다.
 - ② 규정류의 제정 및 개폐가 필요할 때는 담당부서에서 입안하거나 소관부서에 그 입안을 요청함 수 있다.
 - ③ 규정(안)이 2개이상의 부서와 관련되는 경우 관련부서간의 사전합의를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.
 - ④ 제출된 규정안이 상위규정에서 정한 내용과 저촉되거나, 규정안의 중복 여부, 효율성,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담당부서에서는 소관부서와 협의하여 수정, 보완한다.
- 제6조(제정및개폐절차) ① 규정의 제정 및 개폐는 제7조의 심의기구인 동명대학교산학협력단운영 위원회에서 심의하고, 심의·수정·보완된 규정안에 대하여 총장 재가 후 시행한다.
- ② 본 산학단 우영에 필요한 기본 규정은 정관 및 동명대학교산학협력단운영규정에 의한다.
- ③ (삭제 2013.12.16)
- **제7조(심의기구)** 제6조①항의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은 동명대학교산학협력단운영규정 에 의하여 동명대학교산학협력단운영위원회(이하"위원회"라 한다)에서 심의한다.
- 제8조(회의) ①회의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하며,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창성으로 의결한다.
- ② 제 규정의 심의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관계자를 출석시켜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.

제4장 규정류의 관리 및 공포

- 제9조(주관 및 관리) ① 규정류의 운용 및 관리는 규정 담당부서에서 관장한다.
- ② (삭제 2013.12.16)
- 제10조(공포) 제정, 개정된 규정은 교내 전자게시판과 학교 홈페이지의 규정철에 게재함으로써 공 포한다.

제5장 규정류의 효력

- 제11조(효력) ① 제규정류의 효력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그 시행일로부터 발생한다.
- ② 법령 또는 정관에 저촉되는 규정은 그 부분에 한하여 효력을 상실한다.
- ③ 2개 이상의 규정이 내용상 서로 경합되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제정 또는 개정된 규정을

산학협력단규정류관리규정 6-1-65~3

우선한다.

④ 효력기간이 정하여진 규정류라도 그 규정류에 의한 업무가 그 기간 만료 후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을 때에는 그 업무 종료 시까지 효력을 지닐 수 있다.

(본조신설 2013.12.16)

부 칙

①(시행일) 본 규정은 2010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②(규정류 정비) 본 규정 시행전에 제정된 규정류는 본 규정이 정하는 체계와 형식에 따라 재정비한다. 다만, 재정비시 발생할 수 있는 형식의 단순변경 등은 규정의 개정으로 보지 아니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.